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2월 8일

발 의 자 : 조/14의원 외 10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('99. 8. 31) 및 동법 시행령('99. 12. 31)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년1회에서 년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과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개정 (안 제2조 제2항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제36조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(제16조)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2항중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 (감사) ①(생략)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며,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도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후 행한다 ③~⑤ (생략)	제2조 (감사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1차 정례회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~⑤ (현행과 같음)